

제300회 임시회
2011. 5. 20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 5. 20(금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5월 2일
- 회부일자 : 2011년 5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2011년 5월 12일

-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고규창 정책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)을 적용하여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각종위원회 수당지급대상 규정(제3조)
 - 도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
 - 도 의원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 의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: 윤양한)

가. 개정 동기

-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)이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공무원·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관련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공무원 | ○ 수당지급(소관업무이외의 위원 위촉시) | ○ 미지급(도 소속 공무원) |
| 지방의회의원 | ○ 수당지급 | ○ 미지급(※개별법령제외) |

- 따라서,
 -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 위원회 참석수당 미지급.
 - 지방의회의원인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 위원회의 참석수당 미지급
- ※ 개별법령에 따라 지급 할 수도 있음.

다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수당)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,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전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3조(수당) ① 각종 위원회(사이버 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전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제3조(수당)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,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전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.</p> |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)

가. 위원회 참석수당

-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 - 교통비, 식비,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
-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-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